



서울남부지방법원

판 결

사 건 2026고정473 저작권법위반
피 고 인 1. A
2. 주식회사 B
검 사 진동화(기소), 박서연(공판)
판 결 선 고 2026. 6. 15.

주 문

피고인들을 각 벌금 1,5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.

이 유

범 죄 사 실

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C건물, D호, E호에 본점을 두고 제철 설비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, 버너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.

누구든지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연,



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피고인 A

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. 7. 10.경부터 2023. 12. 22.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, 피해자 F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'G'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복제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.

2. 피고인 주식회사 B

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, 장소에서,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

1.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

1. F 점검결과 확인표, PC별 사용현황, 컴퓨터 화면자료

1. 프로그램 등록 확인 자료, 프로그램 소개 자료, 프로그램 크랙 자료, WHOIS 조회 결과,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상세정보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○ 피고인 A: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(포괄하여), 벌금형 선택

○ 피고인 주식회사B: 저작권법 제141조, 제136조 제1항 제1호(포괄하여)

1. 노역장유치

○ 피고인 A: 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

1. 가납명령



○ 피고인들: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양형의 이유

1. 처단형의 범위: 벌금 5,000만 원 이하

2. 선고형의 결정

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.

○ 불리한 정상: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황, 저작권 침해의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하면,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.

○ 유리한 정상: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. 피고인 회사는 2013년판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었고, 피고인 A는 다른 거래처에서 받은 최신 버전 파일을 열 수 없게 되자 2018년판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게 된 것으로,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. 피고인 회사는 이후 2025년판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였고, 이전 년도의 유지보수비를 지불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.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.

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 A의 성행, 연령, 환경, 범행의 동기와 경위,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판사 고소영 _____